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0 선고 2024가단1052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원

피 고 B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4. 7. 16.

판 결 선 고 2024. 8. 20.

주 문

-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23. 5. 19.자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C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19. 접수 제71440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i) 원고가 2020. 12. 16. 소외 주식회사 D에 소외 C과의 2019. 7. 1.자 개인금융신용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605,115원을 지급함으로써 C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한 사실, ii) C이 2022. 10. 10. 모 E의 사망으로 망인 소유였던 별지 기재 부동산의 1/8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상속받아 2023. 5. 4.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23. 5. 19.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3. 5. 19. 접수 제71440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하 '이 사건 증여',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 iii) 이 사건 증여 당시 C은 이 사건 지분 외에 가액 12,365,093원 상당의 적극재산(서울 노원구 F 임야 3967㎡ 및 G 임야 45521㎡의 각 55/6160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소극재산은 이를 훨씬 상회하는 71,871,419원 상당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C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모두 이유 없다.

가.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 수익자인 피고가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데,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는 2022. 6. 10.부터 2023. 1. 10.까지 합계 13,000,000원을 대여해주고 정당하게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등기부상 이 사건 지분의 등기원인이 증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2호증만으로는 피고가 대물변제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피고가 대물변제를 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공동담보가 감소되어 원고 등 다른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었으므로 마찬가지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다. C은 H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을 받아 면책이 예상된다: C이 채무조정결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여 면책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 취소 및 피고의 말소등기의무에 아무런 영향도 줄 수 없다.

판사 김아름

별지